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한근수 의원 대표발의]

의 안 번 호 50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 : 한근수, 원주영, 정현미,

이정애, 김동훈, 박경원,

박은경

1. 제안 이유

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제2항)

나.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규정 정비(안 제15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

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"을 "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"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9항에 따라 관내 교육 청 및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생존수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"보조금에"를 "보조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출한 교육경비에"로, "각급학교"를 "각급학교 및 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교</u>
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,	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	
조에 관한 규정」, 「유아교육	
법」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	
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	
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	
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	
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	
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	
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	
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	
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14조(보조금의 집행) (생 략)	제14조(보조금의 집행) <u>①</u>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
	금법」제11조제9항에 따라 관
	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상
	호 협의하여 생존수영에 필요한
	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
	전출할 수 있다.
제15조(보고 및 검사) ① (생 략)	제15조(보고 및 검사) ① (현행과
	같음)

② 시장은 <u>보조금에</u>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<u>각급학교에</u>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.

② 보조금 및 제14조제2
항에 따라 전출한 교육경비에 -
<u>각급학교 및</u>
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조례 개정 후 세입·세출 증감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생존수영 대상학교로 직접 교부하던 보조금을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9항 개정에 따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상만 변동되는 것으로 기존 생존수영교육경비에 대한 세입·세출에 대한 증감사항 없음.

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이유미

관계법령

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,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 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 고,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,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- ② 공립학교의 설치・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・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12. 29.>
 - 1. 「지방세법」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
 - 2.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[도(道)는 제외한다]
- 3.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0,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, 그 밖의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2항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천분의 36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 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- ④ 시·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,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(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)까지 전출하여

야 한다.

-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(轉出金)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- ① 시·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교육감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, 12, 28.>
- 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⑨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·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1. 12. 28.>
- ① 시·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 ·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